

#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04. 12. 14

제 출 자 : 사 천 시 장

## 1. 의결주문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지역정보화촉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 총괄 부서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3. 주요내용

가.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 위촉규정 변경

- 유관기관·민간단체·학계·언론계·산업체의 장, 교수·교사·연구원, 시의회의원, 업무관련 국·담당관·과장

⇒ 시의회의원, 유관기관·교육계·언론계·산업체의 임직원, 민간인, 소속공무원

나. 협의회 간사 지정규정 변경

- 정보화를 총괄하는 전산부서의 장 ⇒ 정보화촉진업무담당주사

다. 관련법령 명칭 변경

-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라. 기타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 등의 정비

- 용어의 정의 본문규정 신설
- 시장 ⇒ 사천시장
- 시·도 ⇒ 경상남도
- 참석위원 실비변상 및 시행규칙 조항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2) 입법예고 :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생략

##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조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본문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2항중 “시·도”를 “경상남도”로 한다.

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제4항중 “정보화를 총괄하는 전산 부서의 장이”를 “정보화촉진업무담당주사가”로 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유관기관·교육계·언론계·산업체의 임직원,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례 제263호 사천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u>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u>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 ----- ----- ----- <u>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u> ----- ----- -----</p>
<p>제2조(용어의 정의) &lt;신 설&gt;  1~5 (생 략)</p>	<p>제2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현행과 같음)</p>
<p>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u>시장</u>은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제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4 (생 략)</p>	<p>제3조(-----) <u>사천시장</u>(이하 “시장”이라 한다)----- ----- -----  1~4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 시행계획 및 <u>시·도</u>의 지역정보화 추진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④ (생 략)</p>	<p>제4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 <u>경상남도</u> ----- ----- -----  ③~④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구성) ①(생략)</p> <p>②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 내 <u>유관기관·민간단체·학계·언론계·산업체의 장과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교사·연구원, 시의회의원, 업무관련 국·담당관·과장을 위원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한다.</u></p> <p>③(생략)</p> <p>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u>정보화를 총괄하는 전산부서의 장이 된다</u></p> <p>⑤(생략)</p>	<p>제10조(---) ①(현행과 같음)</p> <p>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u>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유관기관·교육계·언론계·산업체의 임직원,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u></p> <p>③(현행과 같음))</p> <p>④----- <u>정보화촉진업무담당주사가 --</u></p> <p>⑤(현행과 같음)</p>
<p>제14조(수당 등) <u>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제14조(-----) <u>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u></p>
<p>&lt;신설&gt;</p> <p>조례 제263호(1998.9.9) 부칙</p> <p>①(시행일) <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p>②(시행규칙) <u>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37조(시행규칙) <u>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조례 제263호(1998.9.9) 부칙</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 관계법령발취

## 정보화촉진기본법

第2條의2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情報化의 촉진과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 및 情報通信基盤의 高度化(이하 "情報化 促進등"이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2001. 1. 16 전문개정>

제3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및 이용자의 책무)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와 정보이용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第15條 (條例) 地方自治團體는 法令의 범위안에서 그 事務에 관하여 條例를 制定할 수 있다. 다만, 住民의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관한 사항이나 罰則을 정할 때에는 法律의 委任이 있어야 한다.